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. 5. 12 선고 2020가단3623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4. 14.

판 결 선 고 2022. 5. 12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‘부동산의 표시’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3. 12. 체결된 매매예약 및 별지 ‘부동산의 표시’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3. 12. 체결된 매매예약을 각 취소한다(소장 청구원인 제5항에는 “위 각 매매예약이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.”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, 소장 청구취지의 기재 내용을 볼 때 원고가 위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까지 청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)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와 C, D, E(이하 'C 등'이라 한다)는 1996. 10.경 평택시 F 임야 13,223㎡, G 임야 15,950㎡(이하 'H리 각 임야'라 한다)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E를 제외한 원고와 C, D이 위 각 임야 중 각 1/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그 후 원고와 C 등은 2007. 9. 11. I, J(이하 'I 등'이라 한다)와 H리 각 임야를 I 등에게 매매대금 합계 2,206,000,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I 등으로부터 2007. 9. 11. 계약금 220,000,000원, 2007. 10. 25. 중도금 1,000,000,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다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,180,000,000원을 나누어 가졌다.

그런데 I 등이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평택시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고, 이에 I 등은 2008년경 원고와 C, D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 위 사건에서 2008. 12. 15. 원고와 C 등이 I 등에게 1,220,000,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, 이에 따라 원고와 C 등은 H리 각 임야를 담보로 원고를 주채무자로 하여 K조합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, 위 대출금에 원고가 별도로 차용한 돈을 보태어 2009. 1. 28. I 등에게 1,269,635,616원을 변제하였다. 그러나 C 등이 위 대출금 등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합239호로 대출금 이자구상금 및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. 5. 16.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,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. 위 확정판결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89,060,0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그런데 C은 별지 '부동산의 표시'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18. 3. 12.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(이하 '이 사건 각 매매예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'부동산의 표시' 제1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8. 3. 13. 접수 제7249호로,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. 3.

13. 접수 제12025호로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.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.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¹⁾).

가. 관련 규정과 법리

1) 민법 제406조 제1항은 “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고 규정하고, 같은 조 제2항은 “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다.

2)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, 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.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(대법원 2001. 2. 27.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).

나. 제소기간 도과 여부

갑 제2호증, 을 제1, 5, 6, 11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2018. 5.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카단594호로 ‘가등기 말소를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권’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‘부동산의 표시’ 제1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8. 3. 13. 접수 제7249호로,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. 3. 13. 접수 제12025호로 각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등기상의

권리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실, 위 법원은 2018. 5. 29.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고, 위 가처분결정은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.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, 원고는 적어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카단594호로 가처분을 신청한 2018. 5.경에는 피고와 C이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 뿐 아니라 위 각 매매예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.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소기간인 1년이 경과한 후인 2020. 7. 13.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.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상호

별지

1)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2. 4. 18.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.